법무법인(유) 화우
YOON & YANG

LEGAL UPDATE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4-2호

Apr. 2024

비조치의견 사례

-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와 관련하여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보험금 지급 실적이 아니라 갱신 전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(240018)-

▪ 요청대상 행위

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[별표 14]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4조 제19항에 따른 **비급여 보험료 차등제**와 관련하여 **보험료 갱신 전 12개월** 이내 기간 동안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바, 이를 **갱신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**간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도 **가능**한지 여부

▪ 관련 법령 요지

개인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의 경우, **보험료 갱신 전 12개월** 이내 기간 동안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(특별약관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함)에 **요율 상대도(할인・할증요율)를 적용**(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[별표 14] 표준사업방법서 실손의료보험편 제4조 제19항)

▪ 회신 요지

① **(할인율 산출)** 매년 **4월 말** 직전 1년 지급통계로 할인율을 산출하여 매년 **7월**에 할인율을 변경하고, 7.1.~차년 6.30. 갱신도래자에 동일한 할인요율 적용 가능, ② **(개인별 차등보험료 적용구간 판정)**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**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**간 비급여보험금 지급실적 기준으로 할인・할증 적용 가능하나, **1회차 갱신도래자**(예 : '23.7.1. 가입하여 '24.7.1. 갱신도래)의 경우, **최초가입일부터 갱신도래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**까지의 기간으로 적용 가능